

2026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2026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을 완화** 하고, 지원 대상을 **전세거주 신혼부부까지 확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4. 16.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I. 사업개요

- ☐ **사 업 명:** 2026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 **모집대상:**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로서 세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세대
- ☐ **모집기간:** 매월 1일 ~ 15일 / 이자청구월(5, 11월) 제외 **※6월부터 시행**
- ☐ **모집세대:** 1,500세대(구입 1,000세대/ 전세 500세대)
-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대구광역시 민원·공모홈서비스 / **6월 1일 오픈**)
(신청경로) : <https://minwon.daegu.go.kr> ⇒ 민원신청·발급 ⇒ “남구 신혼부부” 검색
(바로가기) : <https://minwon.daegu.go.kr/cvpl/AUTN-021/info>
- ☐ **선정방법:** 초과 신청 시 배점 기준표에 따른 고득점순
- ☐ **선정통보:** 신청월 30일 문자발송 예정
- ☐ **지급시기:** 6월, 12월 지급(5월, 11월 이자청구 필수)
- ☐ **진행절차**



※ 선정된 후 반기별 이자 청구까지 완료해야 이자 지급

II. 대상자 및 제외대상

□ **대상자:** 아래 세부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구 분	세 부 조 건	
	구 입	전 세
신혼부부	• <u>혼인신고 10년 이내 (2016. 1. 1. 혼인신고자부터)</u> ※ 나이제한 없음	
부부합산 연 소득	• <u>1.3억원 이하</u> (세전)	• <u>7,500만원 이하</u> (세전)
	※ 2024년 소득 기준(7월부터는 2025년 소득 기준)	
주 택	• <u>구입가 6.5억원 이하</u> (계약서 기준) 및 <u>전용면적 85㎡ 이하</u>	• <u>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u> (계약서 기준) 및 <u>전용면적 85㎡이하</u>
	※ 단, 가족간 계약(매매, 임차, 증여 등)이 아닐 것	
대 출	• <u>금융권</u> 에서 받은 <u>주택구입 또는 전세보증금 용도의 대출</u>	
거 주	• <u>구입 또는 전세거주 주택에 신청일 기준으로 신혼부부 모두 전입 및 거주 중</u>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주택	• <u>1가구 1주택</u> (소유/담보/거주 동일)	• <u>1가구 무주택</u> (임차/거주 동일)

※ 세부조건 유의사항

- 대출금액: 발급일 기준 대출잔액으로 판단함
- 대출용도: 금융거래확인서에 「주택자금」으로 명기되어 있어야 함
 - ▶ 주택구입 또는 전세 전용 은행상품인 경우, 대출용도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
- 임차유형: ‘전세’만 지원 가능 ※ 보증부월세·월세 등 지원 불가
- 보유주택
 - ▶ 분양권, 입주권, 주택공유지분 등을 소유한 경우도 보유 주택 수에 포함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의 계약(매매, 상속, 증여, 임대차계약 등)일 경우
- 대출용도가 주택자금이 아닌 경우(일반, 신용, 마이너스대출 등)
- 금융기관 대출이 아닌 경우(예: 대부업체, 회사복지기금 등)
- 주택자금 대출로 구입 또는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이차지원 기간에 대구시 유사 주거사업 지원을 받는 경우
- 그 밖에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III. 모집 및 신청안내

□ 모집기간 및 신청방법

- 모집기간: 매월 1일 ~ 15일(00:00 ~ 23:00) / 이자청구월(5, 11월) 제외
- 신청자: 대출명의로인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대구시 민원·공모홈서비스/민원신청·발급/신혼부부)
 - ▶ 신청 바로가기: <https://minwon.daegu.go.kr/cvpl/AUTN-021/info>
- 구비서류: 반드시 하나의 압축파일로 업로드

- ① **신청일 기준 1주일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함(직인 필수)
- ②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③ **스캔본 또는 pdf 출력본 권고**(내용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사진파일도 가능)
- ④ **서류의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모두 제출**

구분		유의사항	발급처						
필수	①신청서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공고문[서식1]						
	②주민등록등본	· 전입일 표기 확인	인터넷(정부24)						
	③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인터넷(대법원)						
	④가족관계증명서	· 직계존비속·형제자매를 확인 하기 위함 · 신청자의 부(아버지) 또는 모(어머니) 기준 1부, 배우자의 부(아버지) 또는 모(어머니) 기준 1부 → 총 2부 제출 ※ 부모님 이혼 시, 형제·자매가 나오는 분 기준으로 발급							
	⑤주택(구입/전세) 계약서	· 구입: 계약서상 금액이 6억 5천만원 이하 ※ 분양권 : 계약서 공급금액 기준(확장비 등 옵션 제외)	신청자						
		· 전세: 계약서상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⑥금융거래확인서	· 금융기관 직인 날인 ※ 대출 용도, 담보목록, 대출잔액 확인	금융기관						
⑦소득금액증명원	· 대상: 신청자 및 배우자	홈택스							
	<table><tr><td>소득종류</td><td>연소득 계산 기준</td><td>비고</td></tr><tr><td>근로소득</td><td>"지급받은 총액"</td><td rowspan="2">2024년도 기준 발급 ※ 7월부터는 2025년 기준</td></tr><tr><td>사업소득</td><td>"소득금액 합계"</td></tr></table>		소득종류	연소득 계산 기준	비고	근로소득	"지급받은 총액"	2024년도 기준 발급 ※ 7월부터는 2025년 기준	사업소득
소득종류	연소득 계산 기준		비고						
근로소득	"지급받은 총액"	2024년도 기준 발급 ※ 7월부터는 2025년 기준							
사업소득	"소득금액 합계"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 홈택스 / 사실확인 후 발급증명 / 신고사실없음								
추가	⑧임신헌인서 등	· 임신 중일 때만 제출 ※ 자녀수에 태아 포함	신청인						

IV. 선정방법 및 결과통보

□ 자격심사 및 선정방법

- 자격심사: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확인
- 선정방법: 초과 신청월의 경우 배점 기준표에 따라 고배점순으로 선정

【배점 기준표】

항목	미성년 자녀	부부 합산 연소득	거 주 기 간
	50점	30점	20점
배점 (100점)	2자녀 이상 : 50 1자녀 : 25 *주민등록등본 기준 *태아 포함(증빙제출)	구 입 전 세	6개월 이상 거주 : 20 6개월 미만 거주 : 10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남구에 거주한 기간 *부부 중 남구 거주기간이 짧은
		8천만원이하: 30 8천만원초과: 15	5천만원이하: 30 5천만원초과: 15

※ 동점자 우선순위 ① 미성년자녀 수가 많은 가구 ② 부부 합산 연소득이 낮은 가구 ③ 거주기간이 긴 가구

- 결과통지: 신청월 30일 예정(개별 문자 안내)

V. 지원금액 및 시기 등

□ 지원금액: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00만원)

- 지원기준: 발급일 기준 대출잔액(1억원 한도)의 3.0%이내 대출이자 지원
 - ▶ 연소득 및 대출금리에 따라 세대별 지원한도 적용
 - ▶ 실제 이자 납부한 금액이 지원 한도액 이하일 경우 실납부액만 지원 (원단위 절상)

□ 지원금리

- ▶ 구입 지원 대상자: 연소득 구간에 따라 2.7 ~ 3.0% 차등 적용

구입 지원 대상자	부부합산 연소득(세전)	지원금리	지원 한도액	
	8천만원 이하	3.0%	월 25만원	연 300만원
	8천만원 초과 ~ 1.3억원 이하	2.7%	월 22.5만원	연 270만원

▶ 전세 지원 대상자: 자녀 수에 따라 1.0 ~ 3.0% 차등 적용

전세 지원 대상자	자녀 수	지원금리	지원 한도액	
	무자녀	1%	월 83,340원	연 100만원
	1자녀	2%	월 166,670원	연 200만원
	2자녀 이상	3%	월 25만원	연 300만원

○ 보급자리, 디딤돌, 버팀목 대출 등 정부지원 주택대출의 경우 대출 잔액이 1억원 이하이고, 대출금리가 이자지원 금리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리*를 적용하여 최종 지원금액 계산 *지원금리의 10%

▶ [대출잔액 1억원 이하] 및 [대출금리가 이자지원금리(1.0~3.0%) 이하] 두 가지 조건 동시 만족 시, 본인부담금리 적용

【본인부담금리 적용 예시】

구분	대출 잔액	대출 금리(A)	본인부담금리(B)	실제이자지원금리 (C)	연간 지원금액	월 지원금액
		A	B=A*10%	C=A-B		
예시 1	1억원	2.0%	2.0% * 10% = 0.2%	2.0% - 0.2% = 1.8%	1,800,000원	150,000원
예시 2	7천만원	2.5%	2.5% * 10% = 0.25%	2.5% - 0.25% = 2.25%	1,575,000원	131,250원

□ **지급시기: 연 2회(6월, 12월)**

○ 연 2회 청구(5월, 11월) / **시기별 [이자 청구] 필수**

□ **지급방법:** 세대별* 계좌입금 *대출자 명의

□ **지원기간:** 최대 3년 지원

○ 단, 지원중단 및 환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VI. 지원중단(환수) 및 선정자 관리

□ **이자 지원중단(환수) 사유**

구 분	내 용
중단사유	부적합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거 주) 주소를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세대원 중 1인 이상이 1회 이상) (대 출)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예외: 단순히 주택구입상품을 갈아타는 경우) (주 택) 보유 주택(분양권, 입주권, 공유지분 등 포함) 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세대원 전원) (혼 인) 혼인관계가 변경(이혼 등)되는 경우
	그 밖에 지원중단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수사유 (전액환수)	신청 서류의 허위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및 기타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자 관리

- 점검시기: 지원금 지급 청구 시 구비서류 확인(연 2회)
- 점검대상: 대출이자 지원사업 선정자
- 점검내용: 이자 지원중단 및 환수사유 해당 여부 등
- 조치사항: 위반 통지 후 이자 지원 중단 및 환수

VII. 유의사항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지원금을 받은 경우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조치 및 향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사업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을 요청하며, 서류 보완 마감일(20일 18:00/공휴일인 경우는 다음 근무일)까지 보완하지 않을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 바랍니다.
- 주말 및 공휴일 여부와 관계 없이 매월 15일이 신청 마감일입니다.
-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총괄과 주거지원팀(☎053-664-2961, 2962, 29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1]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대출명의인]	성 명	성 명 (☐ 남, ☐ 여)	연락처	010 - -
	주 소		주택유형 (아파트, 주택 등)	☐ 아파트 ☐ 그 외(단독주택 등)
	신청유형	☐ 구입(매매) ☐ 전세	대출잔액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대출유형	☐ 정부지원 대출(디딤돌, 보금자리, 버팀목전세자금 등) ☐ 그 외		

위와 같이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2025년 2024년

□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대구광역시 남구청에서 지원대상자 확인 및 지원기간 내 자격조건 유지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고유식별정보,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에 관한 정보, 그밖에 주택자금 대출이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 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제공된 개인 및 기업의 식별정보 및 신용정보는 제공 동의일로부터 사업종료일까지 위 사업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사업종료일(철회 및 취소시)에는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5년간 보유하고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위의 신청자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등에 서약·동의합니다.

서약자(동의자)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배 우 자 :	(서명 또는 인)
	자녀 또는 가족 :	(서명 또는 인)
	자녀 또는 가족 :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 ① 신청서 **[서식1]** 1부.
- ② 주민등록등본 1부.
-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
- ④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의 부 또는 모 기준 1부 배우자의 부 또는 모 기준 1부**) **총 2부**.
- ⑤ **[구입]**주택구입계약서 1부. **[전세]**주택임대차계약서 1부.
- ⑥ 금융거래확인서 1부.
- ⑦ 소득금액증명원(신청인 및 배우자) 각 1부씩.
- ⑧ 임신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임신중인 경우만) 1부.

※ 구비서류 유의사항(공고문 3페이지) 참고하여 발급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지원기준]**□ 신청 후 선정된다면, 이자 지원은 어떻게 진행 되나요?**

- 지원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으며, 연 2회 이자청구(5월, 11월)를 거쳐 3년간 지원 예정입니다.
- 최초 지원금 지급 시에는 선정되는 월 이자 납부분부터 계산 됩니다.

선정 월	이자지원 대상 월	이자청구 시기	지원금 지급 시기
2026년 6월	2026년 6월 ~ 10월(5개월분)	2026년 11월	2026년 12월
2026년 7월	2026년 7월 ~ 10월(4개월분)		
2026년 8월	2026년 8월 ~ 10월(3개월분)		
2026년 9월	2026년 9월 ~ 10(2개월분)		
2026년 10월	2026년 10월(1개월분)		
2026년 12월	2026년 12월 ~ 2027년 4월(5개월분)	2027년 5월	2027년 6월

- 단, 이자 지원 중단(환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 신청세대가 모집세대(구입 1,000세대 / 전세 500세대)를 넘을 경우 선정방법이 궁금합니다.

- 구입의 경우, 2026년 1월 선정된 세대부터 누적하여 1,000세대까지 모집하며, 예를 들어, 9월 누적 선정세대가 900세대이고, 10월 신청세대가 200세대일 경우 공고문에 명시된 배점 기준표(총점 100점)에 따라 세대별 고득점순으로 100세대를 선정하게 됩니다.
- 전세의 경우, 2026년 6월 선정된 세대부터 누적하여 500세대까지 모집하며, 초과 신청 시 선정방법은 구입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 확장비 등은 주택가격에 포함인가요?

- 분양가(공급가액)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 발코니 확장비, 기타 옵션비 등 제외

☐ **보증부 월세, 월세의 경우도 신청 가능한가요?**

- 보증부 월세, 월세의 경우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세대주와 관계없이 대출명의인이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 **자녀로 인정되는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 미성년 자녀인 경우 세대원에 포함되며, 임신 중인 경우에도 병원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면 자녀로 인정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 지원조건에 해당되시면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이어도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는 초혼만 가능한가요?**

- 초혼, 재혼 모두 가능합니다.(단, 동일인과의 재혼은 첫 혼인신고일 기준입니다.)

☐ **부부간 증여로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신청가능한가요?**

-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되지 않는 주택은 어떤 것인가요?**

- 공부상(공적인 장부-건축물대장 등) 주택용도가 아닌 경우(지하실, 대피소, 옥탑방 등)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주거용 오피스텔은 지원가능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우자와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 완료되어야 하므로 신청 불가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부(미성년 자녀 포함) 중 1인이 전출했다가 며칠 뒤 다시 전입했습니다. 지원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 전출한 날로부터 지원중단 사유에 해당되며, 전출 이후 기간의 이자 청구 및 지급이 불가합니다.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어떻게 발급 받아야 되나요?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계약 체결하였을 경우 지원제외 대상이 되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 신청자의 부(아버지) 또는 모(어머니) 기준으로 1부, 배우자의 부(아버지) 또는 모(어머니) 기준으로 1부 이렇게 총 2부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 부모님이 이혼하였을 경우 형제, 자매가 나오는 분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주택구입계약서의 경우 매매계약서만 가능한가요?

- 분양권에 관한 계약서도 가능합니다.

☐ 금융거래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연소득 기준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 연소득은 세전 기준입니다.

☐ 부부합산 소득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부부의 2024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확인합니다.
- ※ 2026년 7월 신청부터 2025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사실없음 증명원’ (홈택스 → 검색창 ‘신고사실없음’ 검색)을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보완 요청은 어떤 경우에 하게 되며, 어디에서 보완하나요?

- 구비서류가 누락된 경우, 신청사항과 서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화질이 나빠 내용이 확인 불가능한 경우 등입니다.
- 『민원공모홈서비스 → 민원신청결과확인』에서 보완 가능합니다.

☐ 신청 마감일인 15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신청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 주말 및 공휴일 여부와 관계 없이 15일이 마감일입니다.

[대출용도]

☐ 정부지원 대출에는 어떤 상품들이 있나요?

- ‘보금자리, 아낌이, 디딤돌, 버팀목, 주택도시기금’ 등의 명칭이 들어간 대출입니다.

예)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신생아특례 ‘디딤돌’ 대출 등

☐ 정부지원 대출의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 정부지원 대출의 경우 대출용도가 주택자금, 주택구입목적자금일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다만, [대출잔액 1억원 이하] 및 [대출금리가 이자지원금리(1.0~3.0%) 이하] 두 가지 조건 동시 만족 시, 본인부담금리를 적용합니다.

【본인부담금리 적용 예시】

구분	대출 잔액	대출 금리(A)	본인부담금리(B)	실제이자지원금리 (C)	연간 지원금액	월 지원금액
		A	B=A*10%	C=A-B		
예시 1	1억원	2.0%	2.0% * 10% = 0.2%	2.0% - 0.2% = 1.8%	1,800,000원	150,000원
예시 2	7천만원	2.5%	2.5% * 10% = 0.25%	2.5% - 0.25% = 2.25%	1,575,000원	131,250원

☐ 신용, 일반, 마이너스 대출 등을 받아 주택자금에 사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 신용, 일반, 마이너스 통장 등의 대출자금은 실제로 주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기관이란?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1.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9.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10.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등